

1. 개정 이유

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(법률 제21382호, 2026.2.19. 공포, 2027.2.20. 시행)됨에 따라 방사능오염조사 실시방안을 규정하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방사능오염조사 실시방안 규정 및 국가방사능감시센터 관련 조문 정비
(시행규칙안 제137조 개정 및 제137조의2 신설)

가. 개정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방사능오염조사 실시방안을 규정
나. 국가방사능감시센터(기존 중앙방사능측정소) 관련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7조의 제목 “(방사능측정소의 설치·운영)”을 “(국가방사능감시센터 등의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중앙방사능측정소”를 “국가방사능감시센터”로, “환경상”을 “방사선환경조사, 환경상”으로, “감시·평가”를 “감시·평가 및 방사능오염 조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중앙방사능측정소”를 “국가방사능감시센터”로, “측정소장”을 “센터장 및 측정소장”으로 한다.

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7조의2(방사능오염 조사 실시) ① 업무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조사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.

1. 조사대상 지역 및 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
2. 조사대상 방사성핵종(대표핵종) 선정 및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
3. 조사기간에 관한 사항
4. 조사자료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

② 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.

1. 국외 원자력시설의 특성

2. 방사성핵종의 특성

3.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환경매체

4. 그 밖에 조사의 신뢰성 또는 정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방사능오염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방사성핵종의 추가 또는 제외, 조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7조(방사능측정소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<u>중앙방사능측정소</u> 는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라 <u>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·평가를 위탁받은 기관</u> (이하 “ <u>업무수탁기관</u> ”이라 한다)에 설치하며, 지방방사능측정소는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설치·폐쇄한다.	제137조(국가방사능감시센터 등의 설치·운영) ① ----- -- <u>국가방사능감시센터</u> ----- ----- <u>방사선환경조사, 환경상</u> ---- <u>감시·평가 및 방사능오염 조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② 제1항에 따른 <u>중앙방사능측정소</u> 및 <u>지방방사능측정소</u> 에는 <u>업무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측정소장을 두며</u> ,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<u>업무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</u> .	② ----- <u>국가방사능감시센터</u> ----- ----- <u>센터장 및 측정소장</u>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제137조의2(방사능오염 조사 실시) ① <u>업무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조사계획을 보완할 수 있</u>

다.

1. 조사대상 지역 및 위치 선정
에 관한 사항

2. 조사대상 방사성핵종(대표핵
종) 선정 및 분석방법에 관한
사항

3. 조사기간에 관한 사항

4. 조사자료의 처리 및 관리에
관한 사항

5.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
항

② 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
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하는
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
할 수 있다.

1. 국외 원자력시설의 특성

2. 방사성핵종의 특성

3.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
환경매체

4. 그 밖에 조사의 신뢰성 또는
정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가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방사능오염 조사 과정에서
조사대상 방사성핵종의 추가 또
는 제외, 조사기간 연장 등 필요
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

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